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0. 5. 22 선고 2019나1169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0. 5. 22 선고 2019나11690 판결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5. 17 선고 2018가합762 판결

전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0. 4. 17

판결선 고 2020. 5. 22

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5. 17. 선고 2018가합762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(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)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22,395,000원 및 그중 319,420,000원에 대하여 2012. 8. 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과 그중 2, 975, 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319,4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8. 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 아도,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제1심 판결 8면 15, 21행의 각 "3억 1,942만 원"을 각 "322,395,000원"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,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

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서여정 판사 임 솔